

사업 연도	. . . ~ . . .	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	법인명	
			사업자등록번호	

1. 대손충당금조정

손금 산입액 조정	① 채권잔액 (㉑란의 금액)	② 설정률			③ 한도액 (①×②)	회사계상액			⑦ 한도초과액 (⑥-③)
		(ㄱ) 1 100 ()	(ㄴ) 대손 실적률 ()	(ㄷ) 대손 충당금 적립기준 ()		④ 당기 계상액	⑤ 보충액	⑥ 계	
익금 산입액 조정	⑧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	⑨ 기중 충당금 환입액	⑩ 충당금 부인 누계액		⑪ 당기 대손금 상계액 (㉑의 금액)	⑫ 당기 설정충당금 보충액	⑬ 환입할 금액 (⑧-⑨-⑩- ⑪-⑫)	⑭ 회사 환입액	⑮ 과소환입 · 과다환입 (△) (⑬-⑭)
채 권 잔 액	⑯ 계정과목	⑰ 채권잔액의 장부가액		⑱ 기말 현재 대손금부인누계	⑲ 합계 (⑰+⑱)	⑳ 총당금 설정제외 채권		㉑ 채권잔액 (⑲-⑳)	비 고
	계								

2. 대손금조정

㉒ 일자	㉓ 계정 과목	㉔ 채권 명세	㉕ 대손 사유	㉖ 금액	대손충당금상계액			당기 손비계상액			비 고
					㉗ 계	㉘ 시인액	㉙ 부인액	㉚ 계	㉛ 시인액	㉜ 부인액	
계											

3.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액의 조정

㉝ 대손충당금 환입액 의 익금불산입 금액	익금에 산입할 금액			㉞ 상계 후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금액(㉝-㉞)	비 고
	㉟ 「법인세법」 제34 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해야 할 금액 Min(㉝, ㉞)	㊱ 「법인세법」 제34 조제3항에 따라 익금 에 산입해야 할 금액 Max[0, (㉝-㉞)]	㊲ 차액 Min[㉝, Max(0, ㉟- ㊱)]		

4.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조정

손금 산입액 조 정	㉔ 채권 잔액 (㉕란의 금액)	㉔ 순자산 장부가액	㉔ 손금 산입률	㉔ 한도액 [(㉔-㉔)× ㉔]	회사계상액			㉔ 한도초과액 (㉔-㉔)
					㉔ 당기 계상액	㉔ 보충액	㉔ 계	
익금 산입액 조 정	㉔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	㉔ 기중 충당금 환입액	㉔ 총당금 부인 누계액	㉔ 당기 대손금 상계액 (㉕란의 금액)	㉔ 당기 설정충당금 보충액	㉔ 환입할 금액 (㉔-㉔-㉔ -㉔-㉔)	㉔ 회사 환입액	㉔ 과소환입· 과다환입(△) (㉔-㉔)
관련 채권 잔액	㉔ 계정과목	㉔ 채권잔액의 장부가액	㉔ 기말 현재 대손금부인누계	㉔ 합계 (㉔+㉔)	㉔ 총당금 설정제외 채권	㉔ 채권잔액 (㉔-㉔)	비고	
	계							

5.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 조정

㉔ 일자	㉔ 계정 과목	㉔ 채권 명세	㉔ 대손 사유	㉔ 금액	대손충당금상계액			당기 손비계상액			비고
					㉔ 계	㉔ 시인액	㉔ 부인액	㉔ 계	㉔ 시인액	㉔ 부인액	
계											

작성 방법

1. 대손충당금 조정

- 가. ㉑ 채권잔액란: ㉑ 채권잔액란 중 '계란'에 적힌 금액을 적되, 그 금액은 대손금부인액을 포함한 기말 현재 외상매출금 등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(「법인세법」 제34조제2항에 해당하는 채권의 금액은 제외합니다)으로 합니다.

해당 사업연도의 ㉒과 ㉓의

- 나. ㉒ 설정률란: (㉑) 1/100과 (㉒) 대손실적률(합계금액) 중 큰 비율에 해당하는 란에 그 비율을
직전사업연도의 ㉑의 금액

적습니다. 다만, 영 제61조제2항 단서를 적용받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(㉑) 1/100, (㉒) 대손실적률 또는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(㉒) 대손충당금적립기준 중 큰 비율에 해당하는 란에 그 비율을 적습니다.

- 다. ㉓ 보충액란 및 ㉔ 당기설정 충당금보충액란: 회사가 대손충당금잔액 중 당기에 계상할 대손충당금에 보충한 금액을 적습니다.
라. ㉕ 당기대손금 상계액란: 대손충당금상계액란 중 ㉕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마. ㉖ 기말 현재 대손금부인누계란: 전기말 현재 대손금부인누계액에서 당기손금산입액을 빼고 당기 부인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.

2. 대손금조정

- 가. ㉗ 금액란: 당기 대손발생 총액을 적습니다.
나. ㉘ 부인액란: 부당상계액을 적습니다.
다. ㉙ 부인액란: 부당대손처리분을 적고 비고란에 부인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.
라. ㉚란의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㉛란이 과소환입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하며, ㉛란이 과다환입액(△)인 경우에는 ㉜란의 충당금 부인누계액의 범위에서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합니다.
마. 대손충당금상계액 중 ㉙란의 부인액은 익금산입하고, 당기손비계상액 중 ㉚란의 부인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.

3.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액의 조정

㉝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금액란부터 ㉞ 상계 후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금액란까지: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23에 따라 대손충당금 익금불산입 신청을 한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23제3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익금불산입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) 법인만 작성합니다.

4.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

- 가. ㉟ 채권 잔액란: ㉟ 채권 잔액란 중 '계란'에 적힌 금액을 적되, 그 금액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33 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잔액을 적습니다.
나. ㊱ 손금산입률란: 2024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률은 100분의 10으로 적고,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률은 100분의 100을 한도로 매년 직전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률에서 100분의 10만큼 가산한 율을 적습니다.
다. ㊲ 한도액란: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㉟ 채권 잔액에서 ㉞ 순자산 장부가액(차입금 등을 제외한 순자산 장부가액을 말하며,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)을 뺀 금액에 ㊱ 손금산입률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.